

창고관리 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목적)** 본 규정은 창고관리의 제반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.
- 제 2 조 (적용범위)**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에서 관리하는 모든 창고에 적용되며 별정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.
- 제 3 조 (담당부서)** 창고관리업무는 사무처 관리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4. 4. 21, 2015. 5. 1., 2021. 3. 1.)
- 제 4 조 (자재분류)** 자재분류는 비품, 시설자재, 각종 소모품 및 기타 자재로 대별하며 이의 취급은 품목별로 분류 취급한다.

제 2 장 자재수령, 확인, 입고, 출고

- 제 5 조 (확인 및 수령)** 창고관리책임자는 모든 자재를 입고하기 전에 현품과 구입서를 대조하여 확인 수령하여야 한다.
- 제 6 조 (검사의뢰)** 제5조의 확인을 함에 있어 기술적인 품질검사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기술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- 제 7 조 (입고전표)** 검수를 필한 물품에 관하여는 발주처에서 입고전표를 작성하며 창고관리책임자는 입고전표 내용과 현품을 대조 확인 후 입고보관하고 재고기록카드에 기재한다.
- 제 8 조 (출고)** 물품은 사용부서장이 신청한 전표에 의하여 출고하며 현품을 창고에 입고한 후 그 수속이 완료되지 않으면 출고시킬 수 없다.

제 3 장 물 자 저 장

- 제 9 조 (선관의무)** 창고관리책임자는 물품출납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출납보관에 관한 책임을 진다.
- 제 10 조 (내부도면)** 창고관리책임자는 내부에 창고 내부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 11 조 (관리)** 창고는 언제나 자물쇠로 잠가야 하며 귀중품에 준하는 것은 특별히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 12 조 (출입)** 창고에는 창고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.
- 제 13 조 (보관)** 창고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보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1. 입고 결정된 물품은 정규보관소에 보관한다.
 2.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술지시를 준수하여 보관 및 취급을 하여야 한다.
 3. 변질 또는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는 수리품 또는 폐품으로 이관 처리한다.
 4. 망실된 물품이 발생되었을 때는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.
 5.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.
 6. 효율적인 물품보관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창고공간의 최대 이용을 도모한다.
- 제 14 조 (저장 및 배열)** 물자를 저장 및 배열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1. 도난과 변질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.
 2. 물자항목과 또는 물품종별로 적절히 구역을 배당한다.
 3. 먼저 입고된 물자를 먼저 출고할 수 있게 배열한다.
 4. 검사와 재고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.

제 4 장 반 납

제 15조 (반납) 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 및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.

1. 특정작업을 위하여 지급한 자재로써 작업 완료한 후 잔품이 있을 경우
2. 폐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

제 5 장 재 고 조 사

제 16조 (재고조사) 창고관리책임자는 항시 관리중인 총 자재 혹은 일부자재에 대하여 재고기록카드상의 수량과 현물을 비교 조사하여 물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.

제 17조 (종류) 재고조사는 정기재고조사와 특별재고조사로 분류 실시한다.

1. 정기재고조사 : 일정한 계획일정표에 의하여 연간 정기적으로 전 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고조사
2. 특별재고조사 : 정기재고조사 외에 자재관리 상 필요에 따라 또는 상부지시에 의하여 특정 자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고조사

제 6 장 불용품 및 폐품처리

제 18조 (보관) 창고관리책임자는 폐품, 불용품 및 요 수리 품목별로 물품의 상태 표찰을 붙이고 각 물품의 상태별로 보관한다.

제 19조 (처리) 폐품 및 불용품이 일정량에 도달하면 불용품, 폐품매각처리 신청서를 작성,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시로 처리한다.

부 칙

- ① 이 규정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미비된 세부절차는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